

제 2953호	화순군공보		발행일 : 2020년 7월 15일 발행인 : 화순군수 발행처 :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																					
차										례														
고시																								
화순군 고시 제2020-104호					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2																			
공고																								
화순군 공고 제2020-1084호					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엽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																			
화순군 공고 제2020-1096호					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... 4																			
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
회 란																								

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7. 15.

화 순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도방길 57-60 외 8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(※부여 5건,	폐지 4건)	불		임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 061-379-345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(자동차검사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(검사기간 경과
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, 사전안내서와 건설기계
조종사 적성검사 안내엽서 및 「질서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지
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수취인불명, 반송
함투함, 보관기간경과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
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0. 7. 9. ~ 2020. 7. 24(15일간)

2. 대 상 자 : 불임첨부

3. 송달내용 : 자동차, 건설기계 정기검사(사전, 유효경과)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

4. 문 의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 (전화 061-379-3462)

5. 유의사항

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
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
6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(번호판 영치 등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7. 9.

화 순 군 수



주·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수취인불명,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 . 7. 14.

화 순 군 수



1. 공 고 대 상 : 주·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: 별첨
2. 공 고 기 한(의견제출기한) : 2020.07.14.~2020.08.08.(25일)
3. 의 견 제 출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(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☎061-379-3785)
4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(전자문서포함), 구두진술(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)
5. 기타 안내
 -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% 감경 되므로,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%가 감경됩니다.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,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.
- 1)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2)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~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5) 미성년자

※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 061-379-378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.